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

| 연번 | 의안번호 | 안 건 | 제안자 | 접수일자 | 의결일자 | 의 결 | 비 고 |
|----|------|---|------------------|-------------|-------------|------|---------------|
| 1 | 3396 |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마화룡 의원 대표 발 의 | 2024.12.13. | 2024.12.19. | 원안가결 | 붙임1) 조례안 |
| 2 | 3397 |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오수환 의원 대표 발 의 | 2024.12.13. | 2024.12.19. | 원안가결 | 붙임2) 조례안 |
| 3 | 3398 |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 오수환 의원 대표 발 의 | 2024.12.13. | 2024.12.19. | 원안가결 | 붙임3) 조례안 |
| 4 | 3399 |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최용수 의원 대표 발 의 | 2024.12.13. | 2024.12.19. | 원안가결 | 붙임4) 조례안 |
| 5 | 3400 |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최용수 의원 대표 발 의 | 2024.12.13. | 2024.12.19. | 수정의결 | 붙임5) 수정조례안 |
| 6 | 3371 |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 | 순창군수 | 2024.11.19. | 2024.12.19. | 수정의결 | 붙임6) 수정안 |
| 7 | 3387 |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수 | 2024.12.6. | 2024.12.19. | 원안가결 | |
| 8 | 3391 | 순창 군계획시설(장사시설/자연장지·봉안시설, 도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순창군수 | 2024.11.25. | 2024.12.19. | 찬성의견 | 붙임7) 의견서 |

| 연번 | 의안번호 | 안 건 | 제안자 | 접수일자 | 의결일자 | 의 결 | 비 고 |
|----|------|---|------|-------------|-------------|------|------------|
| 9 | 3388 |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수 | 2024.12.6. | 2024.12.19. | 원안가결 | |
| 10 | 3389 |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수 | 2024.12.6. | 2024.12.19. | 수정의결 | 붙임8) 수정안 |
| 11 | 3390 |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수 | 2024.12.6. | 2024.12.19. | 원안가결 | |
| 12 | 3392 |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순창군수 | 2024.11.25. | 2024.12.19. | 찬성의견 | 붙임9) 의견서 |
| 13 | 3384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순창군수 | 2024.11.20. | 2024.12.19. | 원안가결 | |
| 14 | 3382 |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순창군수 | 2024.11.20. | 2024.12.19. | 원안가결 | |
| 15 | 3381 | 2025년도 예산안 | 순창군수 | 2024.11.20. | 2024.12.19. | 수정의결 | 붙임10) 수정내역 |
| 16 | 3383 |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순창군수 | 2024.11.20. | 2024.12.19. | 원안가결 | |

| 연번 | 의안번호 | 안 건 | 제안자 | 접수일자 | 의결일자 | 의 결 | 비 고 |
|----|------|-------------------------|------|------------|-------------|------|--------------|
| 17 | 3395 |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순창군수 | 2024.12.6. | 2024.12.19. | 원안가결 | |
| 18 | 3393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순창군수 | 2024.12.6. | 2024.12.19. | 수정의결 | 붙임1) 수정내역 |
| 19 | 3394 |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순창군수 | 2024.12.6. | 2024.12.19. | 원안가결 | |

[붙임1]

1. 안건 :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가. 제 안 자 : 의원발의

나. 접수일자 : 2024.12.13.

다. 심사일자 : 2024.12.16.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원안가결(조례안 첨부)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마화룡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396 |
|----------|------|

발의연월일 : 2024. 12. 13.

발의 및 찬성의원 : 마화룡 의원 등 7인

1. 제정이유

-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순창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방 · 지원계획의 수립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예산조치 :
- 협의 등 :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등
- 입법예고기간 :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순창군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밖의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상담 등
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인근 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순창군 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1. 안건 :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안 자 : 의원발의

나. 접수일자 : 2024.12.13.

다. 심사일자 : 2024.12.16.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원안가결(조례안 첨부)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수환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397 |
|----------|------|

발의연월일 : 2024. 12. 13.

발의 및 찬성의원 : 오수환 의원 등 7인

1.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 심의요구·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3조)
-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협의 등 : 기획예산실, 재무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기간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후 실시예정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감사장 등 수여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알림
4.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군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순창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기부증서

성명(단체) :

기부금품 :

귀하께서 소중한 뜻을 담아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우리 순창군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가치있게 쓰겠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순창군수 ○ ○ ○

직인

위 축 장

성 명

귀하를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순창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순 창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 안건 번호 | 기탁자 | | 기탁금품액 (원) | 기탁 접수기관 | 기탁목적 /용도 | 비고 |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기탁금품이 물품일 경우: 품목, 수량 및 환산액 기재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심 의 의 견 서

수 신 : 순창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제 목 : 기탁금품의 접수에 대한 심의의견 제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따른 서면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심 의 안 건 (기 탁 개 요) | | | | 심사의견 (○표기) |
|-------------------|-------------|-------|-----------|---------------|
| 기 탁 자 | 기탁금 (천원) | 기 탁 처 | 기탁용도 및 목적 | |
| | | | | 가·부 |

년 월 일

소속 (주소) : (위원장또는위원)

성 명 : (서 명)

[붙임3]

**1. 안건 :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 가. 제안자 : 의원발의
- 나. 접수일자 : 2024.12.13.
- 다. 심사일자 : 2024.12.16.
-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원안가결(조례안 첨부)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오수환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398 |
|----------|------|

발의연월일 : 2024. 12. 13.

발의 및 찬성의원 : 오수환의원 등 7인

1.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수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4조)
-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수반여부: 여
- 협의 등: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기간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후 실시 예정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순창군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
·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1. 안건 :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제안자 : 의원발의

나. 접수일자 : 2024.12.13.

다. 심사일자 : 2024.12.16.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원안가결(조례안 첨부)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 용 수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399 |
|----------|------|

발의연월일 : 2024. 12. 13.

발의 및 찬성의원 : 최용수 의원 등 7인

1. 제정이유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육성방향(안 제4조)
- 실태조사(안 5조)
- 육성사업 지원 및 컨설팅 등(안 제6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 등 : 기획예산실, 농업기술과 등 협의
- 입법예고기간 :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해야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군 소재 관련법인·단체 등(이하 “법인·단체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육성방향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4조(육성방향) 육성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시책
2. 아열대 농업의 기술 보급
3. 아열대농업전문인력양성
4.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순창군 아열대 작물의 재배현황
2. 순창군 농업인·법인·단체 등 종사자·회원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기술보급사업
2. 전문 인력 양성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단체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5]

1. 안건 :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자 : 의원발의

나. 접수일자 : 2024.12.13.

다. 심사일자 : 2024.12.16.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수정의결(수정조례안 첨부)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 용 수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400 |
|----------|------|

발의연월일 : 2024. 12. 13.

발의 및 찬성의원 : 최용수 의원 등 7인

1. 제정이유

-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파크골프장 시설의 거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사용허가 등(안 제3조)
- 시설 사용의 우선순위 및 시설의 개방(안 제4조~안 제5조)
- 개방 및 사용제한(안 6조)
- 이용시간 및 휴장, 사용료(안 제7조~안 제8조)
-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사용료 등의 반환(안 제9조~안 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및 사용자의 책임(안 제11조~안 제12조)
- 사용자의 부대시설(안 제14조)
- 시설의 관리 및 위탁관리(안 제15조~안 제16조)
- 보험가입 및 준용(안 제17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 등 : 체육진흥사업소 등 협의
- 입법예고기간 :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별표1에 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전용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제8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연회원”이란 제8조의 1년 단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8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경로대상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순창군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소·성명·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징수하려는 사용료를 명시하여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 홈페이지 통합에

약시스템을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연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가입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하며, 이용료는 신용·직불·현금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지불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설 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순창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서 유치한 기업체 등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 및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유료 이용자 증가로 잔디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연회원)·외 이용자를 구분하여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시: 09:00 ~ 18:00
2. 하절기(7~8월): 08:00 ~ 18:00
3. 동절기(11~2월): 09:00 ~ 17:00

②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한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은 휴장한다.
2. 시설의 개·보수 기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 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순창군이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전국·도단위 체육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는 체육행사 및 종목 단체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체육행사
4.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체육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
 6. 경로대상자
 7. 국가유공자 등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9. 「주민등록법」상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명예 순창군민 및 생활군민증 소지자 포함)
 10.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1.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카드 전표 등 확인증(전·당일)을 제시한 사람
 1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

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자는 증명서류 확인으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100분의 90 반환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체육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전액 환급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4. 과오납한 경우

5.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연회원이 가입을 취소하였을 때 연회비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뺀 후 반환한다. 단, 파크골프장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정지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이용권은 시설 이용도중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⑤ 각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가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 조건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판명될 때
5. 시설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②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현황(제2조 관련)

| 시 설 명 | 위 치 | 비 고 | 비고 |
|------------|----------------|--------------------------------------|----|
| 유등섬진강파크골프장 | 유등면 오교리 524-1 | 파크골프장(18홀), 부대시설 | |
| 유등 힐링파크 | 유등면 외이리 561-1 | 파크골프장(9홀), 부대시설 | |
| 쌍치 파크골프장 | 쌍치면 금평리 811-77 | 파크골프장(18홀), 스크린골프연습장(2실), 부대시설 | |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사용료

(단위 : 원)

| 시 설 명 | 체육행사대관 | 비 고 |
|--------------|---------|-----------|
| 유등 섬진강 파크골프장 | 200,000 | 1회 4시간 이내 |
| 유등 힐링파크 | 100,000 | |
| 쌍치 파크골프장 | 200,000 | |

2. 이용료(인당)

(단위 : 원)

| 구 분 | 일일사용료 | 비 고 |
|--------------|-------|------------|
| 유등 섬진강 파크골프장 | 6,000 | 1일 3시간 이내 |
| 유등 힐링파크 | 4,000 | |
| 쌍치 파크골프장 | 6,000 | |
| 쌍치 스크린골프연습장 | 2,000 | 1시간(정원 4인) |

가. 유료 이용자에게는 순창사랑상품권 2,000원권을 지급할 수 있음.

“단” 감면자·쌍치 스크린골프연습장 이용자 제외

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선착순)로 운영할 수 있음.

다. 이용료는 신용·직불·현금카드 등 전자적 결제방법을 원칙으로 함.

3. 연회비(인당)

(단위 : 원)

| 구 분 | 연회비 | 비 고 |
|-----------|---------|----------------|
| 순창군 파크골프장 | 200,000 | 쌍치 스크린골프연습장 제외 |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대상(제9조관련)

| 구분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비 고 |
|------------|----------------------------|------|--|
| 사용료 | 제9조 제1항 제1호내지2호 | 100% | |
| | 제9조 제1항 제3호내지제4호 | 50% | |
| 이용료 연회비 | 제9조 제1항 제5호내지 제8호, 제12호 | 50% | - 중복감면 불가 |
| | 제9조 제1항 제9호내지 제11호 | 100% | 1. 썬치 스크린골프장은 50%감면 2. 숙박 확인증 제시자 1건당 2명이내 |

[별지 제1호]

순창군 파크골프장 사용허가 신청서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 성명(대표자) | | 전 화 번 호 | |
| | 법인·단체명 | | 생 년 월 일 (성별) | (남, 여) |
| 사 용 시 설 | | | | |
| 사 용 인 원 | 총 명(남: 명, 여: 명) | | | |
| 사 용 내 용 | | | | |
| 경기(행사)명 | | | | |
| 사 용 기 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일간) 20 년 월 일 시까지 | | | |
| 사 용 료 | | | | |
|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 | | | | |

[별지 제2호]

순창군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허가서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 성명(대표자) | | 전화번호 | |
| |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 | |
| 사 용 시 설 | | | | |
| 사 용 구 분 | | | | |
| 경기(행사)명 | | | | |
| 사 용 기 간 | | | | |
| 사 용 료 | | | | |
| 허 가 조 건 | | | | |
|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 순 창 군 수 | | | | |

순창군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신청인 | 성 명 (남/여)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세 부 내 용 | 사용기간 | |
| | 감면신청사유 | |
| 납부금액 | 금 원 | 납부확인 |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순창군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

_____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 | | |
|------|-------------------------------|-----------|
| 첨부서류 | 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순창군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회원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여부)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제출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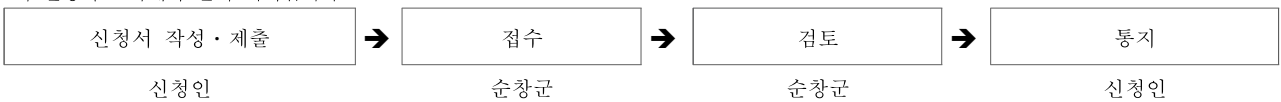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연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은 1일 1회 오전·오후로 제한합니다.
2. 연회원 스티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3.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

순창군 파크골프장 연회원증

(전면)

| |
|---------------------------------|
| No. _____ |
| 연 회원 증 |
| 성 명 : _____ |
| 생년월일 : _____ |
| 주 소 : _____ |
| 기 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 상기인은 순창군 파크골프장 연회원임을 증명함 |
| 20 년 월 일 |
| 순창군수(인) |

※ 규격 : 8.5cm × 5.5cm

(후면)

| |
|---|
| 준수사항 |
| 1. 입장시 보증을 제시하여야 함 |
| 2. 보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 3. 이용은 1일 1회에 한함 |
| 4. 보증은 분실시 재발급이 불가함 |
| 5. 파크골프장 시설공사, 자연재해 등 발생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5.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별지 제5호]

순창군 파크골프장 이용권

(전면)

| | |
|------------------------|-----------------------|
| No. _____ | No. _____ |
| 본 권 | 영 수 증 |
| 금 액 : | 금 액 : |
| 이용시설 : 파크골프장 | 이용시설 : 파크골프장 |
| 이용시간 : 202 : ~ | 이용시간 : 20 : ~ |
| 202 : | 20 : |
| 202 | 202 |
| 순 창 군 수 | 순 창 군 수(인) |

※ 규격 : 10cm × 4.5cm

(후면)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본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환은 불가합니다.2. 당 사업소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효입니다.3. 시설내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니다.4. 유등 힐파크골프장은 유등 섬진강 파크골프장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5. 순창군 파크골프장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7호]

순창군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 성명(대표자) | | 전 화 번 호 | |
| | 법인·단체명 | | 생 년 월 일 (성별) | (남, 여) |
| 행 사 명 | | | | |
| 사 용 목 적 | | | | |
| 사 용 기 간 | 20 년 월 일 | 시부터 | (일간) | |
| | 20 년 월 일 | 시까지 | | |
| 감 면 사 유 | | | | |
| <p>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순창군수 귀하</p> | | | | |

[별지 제8호]

순창군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 성명(대표자) | | 전 화 번 호 | |
| | 법인·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 행 사 명 | | | | |
| 사 용 목 적 | | | | |
| 사 용 기 간 | 20 년 월 일 | 시부터 | (일간) | |
| | 20 년 월 일 | 시까지 | | |
| 사 용 시 설 | | | | |
| 반 환 신 청 구 분 | <input type="checkbox"/> 현금반환 (반환계좌 별첨) <input type="checkbox"/> 기간변경(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 | |
| 반 환 신 청 사 유 | | | | |
| <p>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순창군수 귀하</p> | | | | |

[붙임6]

1. 안건 :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

가. 제 안 자 : 순창군수

나. 접수일자 : 2024.11.19.

다. 심사일자 : 2024.11.19. 보류

2024.12.16. 재심사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수정의결(수정안 첨부)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지원신청)의 내용인 “제4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제비 바우처카드 신청서, 장례식장 발급 장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 신청하여야 한다” 에서 ‘통장사본’ 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구비 서류의 2번 ‘통장사본’ 도 삭제한다.
- 안 부칙 제1조(시행일)의 내용인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서 ‘2025년 2월 1일부터’ 를 ‘2025년 4월 1일부터’ 로 수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수 정 안 |
|--|---|
|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제비 바우처카드 신청서, 장례식장 발급 장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제비 바우처카드 신청서, 장례식장 발급 장제비 영수증, (삭 제),중 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수 정 안 |
|---|--|
| <p data-bbox="411 360 475 398">부칙</p> <p data-bbox="140 427 738 5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p data-bbox="1050 360 1114 398">부칙</p> <p data-bbox="778 427 1377 5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붙임7]

**1. 안건 : 순창 군계획시설(장사시설/자연장지·봉안시설, 도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가. 제 안 자 : 순창군수
- 나. 접수일자 : 2024.11.25.
- 다. 심사일자 : 2024.12.16.
-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찬성의견(의견서 첨부)

순창 군계획시설(장사시설/자연장지·봉안시설, 도로)에 대한

순창군의회 의견서

- 의안 제출 : 순창군수(2024.11.25.)
- 의안심의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16.)
 - 풍산면 금곡리에 설치예정인 공설추모공원 사업계획에 따른 30,000㎡이상의 장사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임.
 - 군 계획시설의 주요내용은
 - 장사시설 36,720㎡
 - 기존 면도 103호선의 도시계획도로(소로)로 변경이며
 -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 규정에 맞아 적정하며
 -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창 군계획시설(장사시설/자연장지·봉안시설, 도로)에 대하여 ‘찬성 의견’ 을 제시함.

[붙임8]

1. 안건 :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안 자 : 순창군수

나. 접수일자 : 2024.12.6.

다. 심사일자 : 2024.12.16.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수정의결(수정안 첨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8조제4항제1호에 ‘2000년 이전 준공 단독주택’ 을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으로 수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2000년 이전 준공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 3. (생략) |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2. ~ 3. (현행과 같음) |

[붙임9]

**1. 안건 :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가. 제 안 자 : 순창군수

나. 접수일자 : 2024.11.25.

다. 심사일자 : 2024.12.16.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찬성의견(의견서 첨부)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순창군의회 의견서

- 의안 제출: 순창군수(2024.11.25.)
- 의안 심의: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2.16.)
- 임순여객의 순창·임실지역 버스 노선 분리에 따른 순창군 버스 고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임
- 2025년말 준공예정인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순창군 버스노선체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운송원가 절감과 군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에 찬성함.

[붙임10]

1. 안건 : 2025년 예산안

가. 제안자 : 순창군수

나. 접수일자 : 2024.11.20.

다. 심사일자 : 2024.12.2.~12.11.(수정예산 12.18.)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수정의결

(단위 : 천원)

| 부서별 | 세부사업 | 통계목 | 사업명 | 군수 제출 | 계수 조정 | 수정액 | 비고 |
|------------|-------------------------|--------------|---------------------|-----------|----------|-----------|----|
| | | | | | 감액 | | |
| | | | | | 291,700 | | |
| 건강 장수과 |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자체) | 사회복지 사업보조 |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지원사업 | 1,392,566 | 100,000 | 1,292,566 | |
| 문화 관광과 | 미술관 운영 (옥천골, 섬진강) | 행사 운영비 | 기획 전시회 | 100,000 | 30,000 | 70,000 | |
| 경제 교통과 | 대중교통 활성화 | 운수업계 보조금 | 공영버스 구입 지원 | 150,000 | 100,000 | 50,000 | |
| 농업 축산과 | 축종별 명품화 지원 | 민간경상 사업보조 | 흑염소 종모 구입 지원사업 | 70,200 | 11,700 | 58,500 | |
| 친환경 농업과 | 친환경농업 체계적 지원 | 민간경상 사업보조 | 고품질 퇴비화를 위한 토탄구입 지원 | 200,000 | 50,000 | 150,000 | |

[붙임11]

1. 안건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제안자 : 순창군수

나. 접수일자 : 2024.12.6.

다. 심사일자 : 2024.12.17.(수정예산 12.18.)

라. 의결일자 : 2024.12.19.

2. 의결 : 수정의결

(단위 : 천원)

| 부서별 | 세부사업 | 통계목 | 사업명 | 군수 제출 | 계수 조정 | 수정액 | 비고 |
|-----------|------------------------|--------------|-----------------|----------|----------|-----|----|
| | | | | | 감액 | | |
| | | | | | 4,000 | | |
| 농업 축산과 |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 사회복지 사업보조 |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 4,000 | 4,000 | 0 | |